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연구자산 및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을 내실화하는 한편,

국제협력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선진 기술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기관을 연구개발기관에 포함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을 완화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기관의 정의에 외국기관 포함 (안 제2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 또는 법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4호의 기관·단체가 국외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법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기관·단체가 국외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법인 중 기술확보, 인력양성 등을 위해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정의하고자 함.”

나. 보안과제 분류 기준 추가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시 검토사항 추가 (안 제8조)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시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함

다.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국외로부터의 지원사항 포함 (안 제9조)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가 수혜 중이거나 수혜 예정인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의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라. 정산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기준 조정 (안 제26조)

“합리적인 정산 회수금 결정을 위해 회수 예외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현물 부족분에 대한 정산 기준을 상향 입법하고자 함.”

마.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추가 (안 제35조)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추가 (안 제45조)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상황 및 상황 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제45조제1항제2호나목)을 ‘「국가전략기술 육성법」(’23.3월 제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로 대체하고 ‘원자력 및 우주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 추가하고자 함.”

사.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안 제64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외국 소재 기관과 공동연구(해외기관이 연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기존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기존 3개)로 완화하고자 함”

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수정 (안 [별표 1])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현금 연구개발비 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자. 보안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안 [별표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 중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보안수당 지급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부 또는 법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4호의 기관·단체가 국외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법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
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4. 외국인 또는 외국의 기관·단체가 국외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
· 운영하는 법인 중 기술확보, 인력양성 등을 위해 국내 연구개발기
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8조제2항 중 “제45조제1항제1호나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을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

제9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8. 연구책임자가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사항

제24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명자료를 제출·등록한 경우(연구개발비 사용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는 제외한다)에는 증명자료를 갖춘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2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액”을 “금액과 제19조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과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공개”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한다.

제43조의 제목“(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을“(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를 “통합정보시스템은”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기능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업무”를 “기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급·정산”을 “지급·정산 기능”으로 하며, 같은 호 부터 제4호까지 중 “업무”를 각각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의2(통합정보시스템 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능을 이용하는 업무

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수행하는 감사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종이문서의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위·변조가 의심되는 자료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출력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장은 제2항에 대한 내용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전략기술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수행하거나 수행 예정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나.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제6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 소재 기관과 공동연구(해외기관이 연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과제에 한함)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별표 1 제2호 전단 중 “전체”를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0 이상
------------------------------	-----------------------

별표 2 제1호차목 중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계획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정부 또는 법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4호의 기관·단체가 국외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법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u>
<u><신설></u>	4. <u>외국인 또는 외국의 기관·단체가 국외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법인 중 기술확보, 인력양성 등을 위해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① (생략)	사전 기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제45조제1항제1호나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② ----- ----- ----- -----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 ----- -----.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② (생략)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연구책임자가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항
8. (생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② (생략)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 ----- -----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명자료를 제출·등록한 경우(연구개발비 사용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는 제외한다)에는 증명자료를 갖춘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 ④ (생략)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⑤ ----- ----- ----- ---- 금액과 제19조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금액----. ---- 연구개발과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생략)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 <u>비공개</u> 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 ----- ----- <u>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u> ----- -----.
1. ~ 7. (생략) ③ ~ ⑤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 --- 법 제20조제1항----- 통합정보시스템은 ----- ----- <u>기능을 포함한다.</u>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의 등록·관리·분석 업무	1. ----- ----- <u>기능</u>
2. 연구개발비의 지급·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정보의 처리·분석 업무	2. ----- <u>지급·정산 기능</u> ----- <u>기능</u>
3.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주체에 관련된 정보의 등록·관리·분석 업무	3. ----- ----- ----- ----- <u>기능</u>

4.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활용 업무	4. ----- ----- ----- ----- <u>기능</u>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5조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삭 제>
③ ~ ⑤ (생략) <신 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통합정보시스템 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 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1.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능을 이용하는 업무 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 발과제에 대해 수행하는 감사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 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 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종이 문서의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 록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위·변조가 의심되는 자료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아 니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출력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 사원장은 제2항에 대한 내용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 과제의 분류) ① ----- ----- -----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 다)로 분류할 수 있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 발과제 가. (생 략)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 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 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다.·라. (생 략) <신 설>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다.·라. (현행과 같음)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 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하거나 수행 예정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 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 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 업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나.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
--	---	--	---	--

<u><신 설></u>	<u>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u> <u>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u>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u>이 보호필요성을 인정하는 연</u> <u>구개발과제</u>
②·③ (생 략)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 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할 수 있다. 1. 2. (생 략) 3. <u>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u> <u>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u> <u>과제</u> 4. ~ 7. (생 략) <u><신 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 7. (현행과 같음) ③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령</u> <u>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 소재</u> <u>기관과 공동연구(해외기관이 연</u> <u>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과제</u> <u>에 한함)를 수행하는 연구자에</u> <u>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u> <u>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u>

	<u>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u> <u>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u> <u>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u> <u>다.</u>
--	---

현행 [별표 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u>연구개발비</u> 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u>연구개발비</u> 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u>연구개발비</u> 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개정안 [별표 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u>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u>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u>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u>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u>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u>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u>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u>	<u>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0 이상</u>

현행 [별표 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 자.	(생 략)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u>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u> 에게 지급하는 <u>장려금</u>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생 략)
나. 연구지원비	(생 략)
다. 성과활용 지원비	(생 략)

개정안 [별표 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u>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u> 및 <u>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u> 에게 지급하는 <u>장려금</u>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현행과 같음)
나. 연구지원비	(현행과 같음)
다. 성과활용 지원비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연 락 처	(044) 202 - 6951